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67995 판결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67995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532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 선고 2018. 2.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532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지상목

판사송창현

판사김선희

별지